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48
----------	-------

발의연월일 : 2026. 5. 22.

발 의 자 : 양부남 · 조계원 · 정태호
정준호 · 복기왕 · 김한규
김문수 · 윤준병 · 이정문
김준혁 · 박정현 · 박균택
전진숙 · 이건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2차 피해와 범죄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

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스톡킹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1항 및 제12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

⑪ 제2항제2호 및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스토킹·성폭력범죄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피해아동·청소년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자등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보는 죄의 피해자를 포함한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및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2. 제한대상자

가. 제1호가목의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행위를 행한 사람

나. 제1호나목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의 죄를 행한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보는 죄를 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다. 제1호다목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성범죄를 행한 사람

⑫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11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2항제2호 또는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11항제2호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피해자 또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 ⑩ (생략)</p> <p><u><신 설></u></p>	<p>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 ⑩ (현행과 같음)</p> <p><u>⑪ 제2항제2호 및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스토킹·성폭력범죄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u></p> <p><u>1. 피해자 또는 피해아동·청소년</u></p> <p style="padding-left: 2em;"><u>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자등</u></p> <p style="padding-left: 2em;"><u>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u></p>

해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보는 죄의 피해자를 포함한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및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2. 제한대상자

가. 제1호가목의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 행위를 행한 사람

나. 제1호나목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의 죄를 행한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보는 죄를 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다. 제1호다목의 피해아동·

<신 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 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성범죄를 행한 사람

⑫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11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2항제2호 또는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11항제2호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피해자 또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⑬ -----제12항까지의-----

-----.